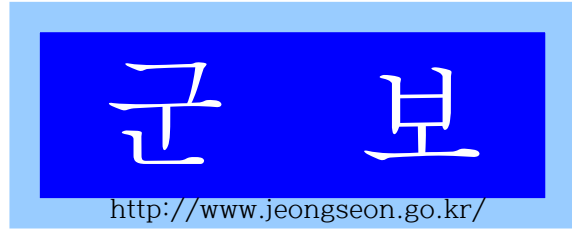


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641호 2023. 10. 4. (수)

【공 고】

- 정선군 공고 제2023-1137호 함백산 야생화 운영지원센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...1
- 정선군 공고 제2023-1149호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특정빈집 철거명령 공고.....4
- 정선군 공고 제2023-1150호 정선(정선) 군계획시설사업(사회복지시설) 공사 완료 공고.....5
- 정선군 공고 제2023 -1163호 정선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.....6
-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-23호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....11
-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-24호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직제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17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관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공 고

정선군 공고 제2023-1137호

함백산 야생화 운영지원센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

정선 함백산 야생화 운영지원센터 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 및 훼손·도난 등 재난·재해 발생 대비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,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9월 21일

정 선 군 수

1.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

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623 일원 함백산 야생화 운영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이용객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과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

2. 관련근거

- 가.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
- 나.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

3. 사업개요

- 가. 사 업 명 : 함백산 야생화 운영지원센터 CCTV 설치
- 나. 시 행 자 : 정선군(전략산업과)
- 다. 설치장소 :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623
 - 함백산 야생화 운영지원센터
- 라. 설치대수 : CCTV 8대

4. 공고개요

- 가. 공고기간 : 2023. 9. 21. ~ 2023. 10. 11.(20일간)
- 나. 공고방법 : 정선군청 홈페이지(<http://www.jeongseon.go.kr>)

5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청 전략산업과로 방문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 : 2023. 10. 11.까지

나.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(기한 내 도착분까지 유효), 팩스

다. 제 출 처 : 정선군 전략산업과

- 우 편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(정선군청 전략산업과)

- 전 화 : 033) 560-2350

- F A X : 033) 560-2594

라. 기재사항 :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, 성명(단체명) 등 인적사항

마. 공청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,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고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합니다.

**「함백산 야생화 운영지원센터 CCTV 설치」
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**
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생년월일	
	주 소		전화번호	
행정예고(안)		수정제출(안)		사 유

함백산 야생화 운영지원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제 출 자

(서명 또는 인)

정선군수 귀하

정선군 공고 제2023-1149호

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특정빈집 철거명령 공고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65조의5제1항에 의하여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·개축·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나, 건축물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연락 불가능함으로 철거 결정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25일

정 선 군 수

1. 공고내용 :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특정빈집 철거명령 공고
2. 공고기간 : 2023. 9. 26. ~ 2023. 11. 25. (60일간)
3. 공고방법 : 일간신문, 전국 시·군·구 게시관 및 정선군청 홈페이지
4. 법적근거 : 「농어촌정비법」 제65조의5
5. 공고대상 :

구분	위치 (정선군)	용도	구조	소유자	심의결과
1	고한읍 고한리 281번지 일원 ※고한읍생태산림욕장 및 약수	주택	목조 슬레이트지붕	미상	철거
2	터 부근	주택	목조 슬레이트지붕	미상	철거

6. 기타사항

가. 상기 특정빈집에 대하여 60일 이내 철거를 요청하는 바이며, 임하지 않을 경우 「농어촌정비법」 제65조의5(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)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 건축팀(☎033-560-2490)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정선군 공고 제2023-1150호

정선(정선) 군계획시설사업(사회복지시설) 공사 완료 공고

정선군 고시 제2005-37호(2005. 7. 8.)로 최초 결정된 정선 군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에 대하여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증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27일

정 선 군 수

1. 위 치 :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869-1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 : 군계획시설사업(사회복지시설)

나. 명 칭 : 정선(정선) 군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 증축공사(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)
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군계획결정		실시계획인가	비고
	세부시설명	면적(m ²)	금회 시행	
공공문화 체육시설	사회복지시설	29,900	☐ 증축내용 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A=831.79m ² (부지면적 9,947m ²)	

4. 사업시행자 및 주소

가. 성 명 : 정선군수(복지과)

나. 주 소 :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

5. 사업기간

가. 착수일 : 2021. 11. 10.

나. 준공일 : 2023. 5. 4.

정선군 공고 제2023 -1163호

정선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「정선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27일

정 선 군 수

1. 제정(개정)이유

- 가.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근거 마련
- 나.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한 우리군 위상 제고 및 효율적 군정 홍보 추진

2. 주요내용

가. 홍보대사 임무 (안 제2조)

-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 규정

나. 홍보대사 위·해촉 (안 제3~4조)

- 홍보대사의 위촉요건 및 임기 규정
- 홍보대사의 해촉사유 규정

다. 홍보대사 예우 및 보상 (안 제6조)

-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, 임무 수행 시 필요한 의전 및 예우 규정
-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활동비 등 보상 규정

3. 의견제출

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(화)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(기획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- 제출자의 성명(법인,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의견

나. 의견제출 및 문의처 : 정선군청 기획관

- 연락처 : 전화(033-560-2224), 팩스(033-560-2592)
- 주 소 : (23161)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관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, 직접방문

- 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2. 조례 제정안 1부. 끝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정선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개정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정선군 조례 제 호

정선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정선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정선군 홍보대사의 위촉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군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정선군 홍보대사(이하 "홍보대사"라 한다)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선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·외 활동
2. 주요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
3.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
4.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위촉)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1.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
2. 군의 경제적,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·외 인사
3.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

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해촉)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
3.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4.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

제5조(운영)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기획관에서 주관하되,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기획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. 단,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·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.

제6조(예우 및 보상)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,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.

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군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-23호

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정선군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9월 26일

정선군의회 의장

1. 개정이유

-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(2023.9.25.)으로 정선군의회 정책지원관 3명의 정원이 모두 반영되어 조례에 반영된 정책지원관의 설치 기한 및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정책지원관 정원 반영으로 정책지원관 설치 기한 및 범위 규정 정비(안 제5조제1항)
-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 관련 규정 수정(안 제5조제2항)

3. 예고기간 : 2023. 9. 26. ~ 10. 6.(초일불산입 / 10일간)

4. 조 례 안 : 붙임 참조

5. 의견제출

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6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(의회사무과)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의견제출 및 문의처

- 주 소: (우)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, 정선군의회
- 전 화: 033-560-2503
- 팩 스: 033-562-5203
- 이 메 일: yun2003@korea.kr
- 홈페이지
 - 정선군의회 <https://council.jeongseon.go.kr/>
 - 정선군 <http://www.jeongseon.go.kr>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견	비고
	찬 성	반 대		

정선군의회 조례 제 호

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한다) 및” 을 “한다) 제41조 및” 으로, “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,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정수의 2분의 1범위” 를 “위원회 또는 사무과에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47조에서 제51조까지” 를 “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” 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정책지원관) ①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,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.	제5조(정책지원관) ① ----- ----- 한다) 제41조 및 ----- ----- ----- - 위원회 또는 사무과에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·조사·연구하고, 법 제47조에서 제51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	② ----- -----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----- -----.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3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)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“정책지원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,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

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5조(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)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·도의 의회사무처, 시·군·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,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21. 12. 16.>

② 시·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시·도와 시·군·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(定數)는 별표 5와 같다. <개정 2011. 8. 22.>

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,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·의회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④ 시·도와 시·군·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(위원회를 포함한다)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: 6급 이하

2. 시·군·구의 경우: 7급 이하

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(이하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이라 한다)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-24호

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직제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

「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직제관리 규정」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정선군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9월 26일

정선군의회회의장

1. 개정이유

- 「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의 일부개정(2023.9.25.)에 따라 반영된 정원으로 의회사무과 내 팀 신설 및 분장사무를 정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팀 설치 및 분장사무 수정(안 제3조)
 - 사무과에 정책지원팀 신설
 - 각 팀별 분장사무 조정

3. 예고기간 : 2023. 9. 26. ~ 10. 6.(초일불산입 / 10일간)

4. 규 정 안 : 붙임 참조

5. 의견제출

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6일까지 정선군의회회의장(의회사무과)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의견제출 및 문의처

- 주 소: (우)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, 정선군의회

- 전 화: 033-560-2503
- 팩 스: 033-562-5203
- 이 메 일: yun2003@korea.kr
- 홈페이지
 - 정선군의회 <https://council.jeongseon.go.kr/>
 - 정선군 <http://www.jeongseon.go.kr>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직제관리 규정 전부개정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견	비고
	찬 성	반 대		

정선군의회 훈령 제 호

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직제관리 규정 전부개정안

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직제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직제관리 규정 전부개정안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」에 의하여 의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의 하부조직 직제 및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각 업무담당은 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도·감독한다.

제3조(팀의 설치 및 분장사무) ① 사무과에 의정담당, 의사담당, 정책지원담당을 두고 지방공무원 6급 상당으로 한다.

② 의정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의회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소관업무 종합조정
2. 의원 등록 관리, 행사 일정 관리
3. 의회 소관예산의 편성, 집행, 결산에 관한 사항
4. 사무직원의 인사업무 및 공무원 관리
5.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
6. 의원 교육 및 연수(국,내외) 추진
7. 의전 및 대외 협력, 교류에 관한 사항
8. 포상, 문서, 보안, 관인관리
9. 단배식(신년인사회) 등 행사
10. 의회 청사시설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
11. 의정 보도자료 수집,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
12. 공용차량 관리 및 운행
13. 의정회 운영지원
14. 그 밖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
③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회기운영 기본계획 수립
2.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
3. 본회의 의사진행 보조

4. 각종 의안의 접수, 인쇄, 배부, 이송, 보존 등 처리
5. 의결문서의 보존, 발간, 이송 등 처리
6.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
7. 청원, 진정의 접수, 분류 및 처리
8. 의원간담회 운영
9. 회의록(속기) 작성 보관,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
10.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
11. 의장단·임시의장 선거 및 위원회 구성
12.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
13. 방송장비·음향시설 관리운영
14. 방청, 참관,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
15. 의회 홈페이지 관리
16. 개원식
17. 의사진행 보도자료 제공

④ 정책지원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지원
2.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
3. 의회 입법·법률고문 관리
4. 결의문·건의문·성명서 작성

제4조(대외직명) 사무과 직원의 대외직명은 「정선군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」에 따른다.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제2조(정원의 총수) 정선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70명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654명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6명

□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무과장)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
2. 문서, 보안,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
4. 의회청사 시설,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
5. 의회경비 및 방청, 참관,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
6.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
7.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
8. 의정 보도자료 수집,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
9. 각종 회의록 작성, 보관,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
10. 각종 의안의 접수, 인쇄, 배부, 이송 등 처리 종합
11.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
12. 청원, 진정서의 접수, 분류 및 처리
13. 의결문서의 보존, 발간, 이송 등 처리 총괄
14.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전문위원) 전문위원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
2.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
3.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
4. 그 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

제4조(정책지원관) 정책지원관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

관사무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

1. 조례 제정·개폐·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
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3. 행정사무감사·조사 및 보고처리 지원
4.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·분석 지원
5. 그 밖의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